전주고등학교 매점 사용・수익 허가 특수조건

본교 매점의 사용·수익허가에 있어 다음과 같은 특수조건을 부과하여 우리학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 1. 사용자는 매점운영과 관련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친절하여야 하며, 학생의 불만을 적극 수용하는 등 학생생활지도, 보건위생 및 학교의 교육 환경조성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매점을 운영하여야 한다.
- 2. 매점 판매물품의 종류, 가격, 운영시간은 학생인권부장의 지도감독과 학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학교에서 요구할 시 거래명세표, 운영현황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3. <u>판매품목</u>: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과자류, 음료수(탄산음료 제외), 포장된 빵종류, 문구류, 빙과류, 생수, 사탕류, 환경미화용품 등이며, 제조년월일 및 유통기한이 확실한 제품
- 4. 판매제한품목 : 김밥, 라면, 햄버거, 샌드위치, 삶은 계란, 소세지류, 불량 식품, 무신고(무허가) 제품, 표시 기준 위반 제품(표시사항 미표시, 허위 기재 등), 부패·변질된 제품, 식품위생법상 위반제품, 기타 현장조리식품 등 식중독의 우려가 있는 식품(조리판매 행위 일절 금지), 탄산함유음료, 커피 등 카페인 함유 함유 음료, 비포장 식품류, 유해색소 등 유해 성분 과다 함유 식품류, 주류, 복권류 등 사행성 물품, 햄버거빵류(햄,소세지, 야채함유 빵종류)등 청소년유해식품과 기타 학교장이 판매 금지한 품목을 판매할 수 없다.
- 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공고하거나 학교에 통보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한다.
- 6. 기타서비스제공가능행위 : 음료(커피 등 카페인 함유음료, 탄산음료 제외) 자판기 영업 (매점 내에 설치)

- 7. 판매물품은 정찰가격이 표시된 제품으로 덤핑제품이 아닌 국내 시중의 지명도 있는 제조회사의 양질의 물품이어야 하며, <u>시중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다.</u>
- 8. 사용인은 항상 매장의 청결을 유지하고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교육환경에 저해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모든 판매물품에 대한 유통기한을 준수하고, 판매물품별 보존 및 유통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매점 판매 물품으로 인하여 식품위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사용자가지며, 사고원인이 사용자의 과실에 있을 경우 허가는 취소된다.)
- 9. 사용자는 매점운영에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관청의 인·허가 및 기타 신고사항에 대한 일체를 사용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단, 이를 해태하여 학교 운영상 착오를 초래하거나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모든 배상책임을 진다.
- 10. 사용자는 별도 판매원을 두고자 할 경우에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에 동의하여야 하며, 학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판매원은 깨끗하고 단정한 복장으로 고객에 대해 항상 친절하고 성실한 자세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교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판매원의 부적절한 복장 및 태도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학교에서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자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른 판매원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11. 매점 운영 중 발생한 사용자 또는 판매원의 재해 또는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학교 및 소송자격자인 전라북도교육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 12. 사용자는 매점 운영 및 판매된 물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사 실내(복도, 계단실 등) 및 실외 쓰레기에 대하여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자체처리 (매점입구에 분리수거함 설치)하고, 매점내부 및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학교 내에 버려진 매점 판매 물품 쓰레기(상품포장지, 음식찌꺼기 등)를 수업 중 수시로 수거하여 교내환경이 오염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 13. 도난방지를 위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고, 매점 보안을 위한 방범시설 및 무인경비 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계약 기간이 만료될 경우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14. 수업시간에는 학생들에게 물품을 판매하지 못하며, 학교장이 학생들의 생활지도 등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기당 5일 이하로 매점운영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학교장의 지시에 전적으로 따라야 한다.
- 15. 학교시설의 긴급한 수선을 위하여 단전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16. 신종인플루엔자 등과 같은 전국적 규모의 전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학교 가 일정기간 이내에서 휴교할 수 있고 이 경우 학교정책에 협조하여야 하며 학교에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 17. 매점운영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공공요금은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공공요금 연 이백칠십육만원(₩2,760,000) 납부
- 18. 신용카드기 설치(학교장 특별요구사항) : 학생들의 사용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19. 해당법령이나 관계규정의 변경에 따른 학교장의 매점판매 품목에 대한 조정 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일체 학교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20. 신규 사업자일 경우 사용 개시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 등 관계법령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필하고 증명서 사본을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21. 사용자가 매점의 표시간판이나 홍보물을 게시할 경우 학교 교육환경조성에 저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22. 사용자는 매점 집기의 망실, 파손에 대해 수선 및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

- 23. 사용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매점과 자동판매기의 경영 및 영업을 타인에게 위임·위탁할 수 없고, 매점내의 물품 등을 보호한다는 이유 및 기타 사유로 타인이매점 내에 거주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 허가를 취소하여도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와 관련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은 대리인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한다)에게 운 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